

“세계의유업”(“오스트레일리아펀”)

奧斯特雷 일리아略農產業에 對한 政府援助 改革革案

-産業援助委具會에 보내는 農業經濟局報告書 -

I. 要 約

1985년 5월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낙농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각종 정책에 관한 평가와 검토를 전체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음료용 및 가공원료용 생유(生乳) 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정책의 검토 수입 및 음료용 생유 거래를 자유롭게 (free) 했을 때의 실험적 평가와 분석.

(2) 낙농품에 대한 국제시장 평가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대체정책안(化替政策案) 설명.

1. 本 報告書의 作成經緯

1982년 11월22일. 행정관리 담당대신 (minister For Administrative services)은 산업위원회에 12개월 이내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국내낙농산업에 대하여 원조를 할 것인가, 만일 한다면 어떠한 원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또 6개월 이내에, 「1983/84년도 낙농산업 안정화 제도 아래 지정된 유제품에 대하여 최저보증(under write)을 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1983년 2월 농업경제국은 「최저보증제 도를

1983/84년도 역시 계속할 것인가」의 문제에 한하여 재빨리 조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했다(BAE1983b). 농업경제국은, 현행의 최저보증제도를 1983/84년도에 개정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그 이유로 다음 두가지로 지적했다.

(1) 최저보증제도는 낙농산업에 대해 취해지고 있는 여러정책중 가장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최저보증 규정의 어떠한 개정도, 이를 제정책 전체를 포함 재검토한 뒤에 고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사료된다는 것.

(2) 어쨌던 1983/84년도의 낙농의 전망은 밝기 때문에 최저보증에 의한 지불을 필요로 하는 사태는 없을 것이며, 최저보증 규정을 이대로 유지한다. 해도 여기에 필요한 납세자의 부담은 미미하거나 전혀 없을 것 같다는 것.

2. 酪農產業의 現狀과 展望

이 10년간. 변천하는 시장(市場) 환경에 재빨리 적응해온 결과, 오스트레일리아의 낙농은 1980년대초 까지는 다른 작목(作物)에 비해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려 그 지위를 확고한 것으로 하고 있다. 구조(構造)의 조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었으며, 농가 1호당 실질 수입은 거의 3/4이 개선되었다.

역사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낙농산업은 음료용 생유부문과 가공원료용 생유부문의 두 부문으로 분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분리는 음료용 생유부문의 확장에 따라 각주(州)마다 상당히 불명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음료용 생유부문에 참가하고 있는 농가의 비율은 오스트레일리아 전체로 1969년 / 70년도에 70%였던것이 1979 / 80년도에는 91%, 이후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음료용 생유부문 참여는 주(州)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빅토리아주 및 타스마니아주는 가공원료용 생유생산에 편중되어 있으며, 그밖에 주는 음료용 생유생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차이는 농가 수익의 일관된 패턴과는 하등 상관이 없다. 빅토리아주의 농가 평균현금수익은 음료용 생유 중심형 타주의 농가와 거의 같다. 가공원료용 생유생산의 이러한 고정 코스트(생산비)가 음료용 생유생산의 그것과 비교해서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부문간의 평균농가소득(고정코스트 및 현금코스트를 반영하고 있다)의 차이는 전체적으로는 작은 것이 되어있다고 하겠다.

3. 現行의 援助와 保護

오스트레일리아 낙농산업은 정부가 크게 관여하고 있다. 수입품에 대하여는 관세(關稅) 비관세의 장벽이 존재하며, 특히 뉴우지일랜드産에 대해서는, 양국의 긴밀한 경제관계 수립을 위해, 협정에 의거한 비공식적인 수입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원조의 중심은 법률에 의한 지지(支持)라는 형태를 취한것이며, 음료용 및 가공원료용 어느것이나 생유판매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원조는 수출해야 할 잉여생산이 상당량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잉여분은 가공원료용 생유생산의 약 28%, 전체 생유생산의 약 20%가 된다.

원조의 정도나 비율을 개별적으로 추산하려면, 전혀 자유로운 시장조건을 설정하여 생산·가격·수요의 수준을 엄밀하게 비교해야 한다.

오랫동안 정부가 낙농산업에 깊이 관여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원조가 어느정도의 것인가를 정확하게 산출하기는 곤란하다. 국내시장을 자유시장으로 했을때, 오스트레일리아는 유제품의 순(純) 수출국이 되는것인가 아니면 순수입국이 되는것인가. 하는 전번의 산업원조위원회에 의한 조사(IAC 1976) 이후, 낙농산업 원조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었던 의문점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다.

낙농품의 가격을 「수출등가」(輸出等價) 가격으로 보느냐 「수입등가」 가격으로 보느냐는 제쳐놓고라도, 가공원료용 생유생산에 대한 실질적 보호율은, 다른 국내산업, 특히 다른 농산물의 평균에 비해 높은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전번에 있는 농업경제국(1981) 및 산업원조위원회(1976)의 추계치(推計值)보다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실질보호율을 산정할때, 생산이 가격변화에 반응을 보인다는것이 충분히 인식되었으며, 이로인해 1981 / 82년도 가공원료용 생유부문 실질보호율은 「수입등가」 가격 베이스로 약 35%, 「수출등가」 가격베이스로 약 15% 이상, 대략 35% 가까운 수치로 개정되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국내가격의 상승이 수출가격 상승을 상당히 웃돌고 있어, 실질보호율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음료용 생유부문의 실질보호율은 가공원료용보다 한결 높은것으로 되어있다.

이처럼 높은 보호율은, 개개의 형태로 주어지고 있는 보호의 수준보다 훨씬 많은 원조가 제공되고 있는것을 나타낸것이며(하기야 1981/82년도 가공원료용 생유부문 보호율은 「수입등가」 가격으로 보았을때 비교적 낮았다). 이것이 생산에 자극을 준것이다.

수출하지 않으면 않될 만큼의 잉여생산이 계속되면, 평균지불(국내에서 징수하는 과정금제도를 포함) 및 음료용 생유가격제도에서 오는 총 소비자부담 코스트(소비자에게서 생산자에게 이전하는 소득)은 연간 약 3 억불이 된다고 한다. 수입등가 가격 베이스의 경우, 이 소비자부담 코스트는, 수입품 가격이, 수송비 기타 경비의 상승에 따라 연간 약 2 억불로 떨어진다. 그

러나, 수입등가가격 베이스의 원조수준 산출에는, 비교적 능율이 좋은 생산자의 원조가 없으면 낙농을 중지할수밖에 없는 생산성이 낮은자에게 주는 년간 약 1,400만불의 추가적(소득의) 이전이 있으며, 이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들 소비자 소득 이전의 대부분은 음료용 생유에 관한 것이다. 금번의 소비자부담 추정액은 전번 추정액보다 높은것으로 되어있다. 그 이유는, 현행 음료용 생유 판매 결정(전번은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과 관련해서 생기는 고생산 코스트가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별개의 코스트로 구분되어 취급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4. 援助의 經濟的코스트

앞서 말한바와같이, 원조의 수준이 높아지면, 따라서 수익성의 수준도 높아지는것은 아닌것 같다. 특히 음료용 생유를 중점적으로하는 농가에 대한 소비자 이전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해도, 일반적으로 가공용 생유 중심의 농가보다 높은 수익성을 가져온다고는 할수없다.

여기서 말하는 음료용 생유 생산의 높은 코스 트는 정부의 시장(市場) 개입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이제는 다음의 관점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고있다.

가. 음료용 생유는 년간을 통해 계속 공급되

어야하나, 그때문에 높은 코스트를 수반하게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공급농가 그룹에 의해, 그 공급이 보증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다.

나. 음료용 생유에 참여하는데는 지리적인 제약이 있으며, 이때문에 막대한 코스트를 필요로 하는것은 자명하다.

다. 생산자나 소비자가 겨울철 생유생산의 높은 코스트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처하고, 음료용 생유의 계절적 유가를 고려해야 할것이다.

라. 년간을 통해 일정한 소비자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음료용 생유를 인위적으로 안정시키는 제도를 채택하는것은, 결과적으로 보아 가공원료용 생유부문 코스트를 높이는것이 될것이다.

가공원료용 생유, 음료용생유를 막는하고, 생산을 자극하는 성질의 협행제도는 비경제적인 생산을 초래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경제에 「수출 등가가격」으로 보나 「수입등가가격」으로보나 년간 약 2,500~4,000만불의 손실을 가져오며, 한편, 별도소득 이전지불에 관한 배분(配分)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상과같은 배경으로 볼때, 낙농산업에 대한 원조를, 그 형태나 수준에있어 현행의 제도를 존속시키고자 하는 주장은 경제적으로 그 이유가 빈약하다 하겠다.

●食品의 冷凍保存方法 (출원공고 : 86-364)

본 발명은 생선, 조개류, 육류나 김밥 또는 떡과 같이 가공된 신선한 식품으로부터 냉동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데 冷藏은 酵素의 활동을 억제하고, 미생물의 성장이나 식품성분의 酸化를 억제하여 食品의 腐敗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식품이 최초 상온에서 -80°C ~ -100°C 의 냉매로 냉각하여 15분간 식품주위에 아이스 캡슐을 생성하도록 하여 아이스캡슐 생성단계와 식품을 주위 온도 -25°C ~ -35°C 로 냉각하여 식품의 内質部 온도가 약 0°C 가 되도록 하는 완냉단계와 식품을 -80°C ~ -100°C 의 냉매로 냉각시켜 식품의 内質部 온도가 약 -6°C 이하로 낮아지도록 하는 급냉단계, 그리고 식품을 일정시간 비교적 완만한 온도로 냉각시켜 냉동하고 다음 소비될 때까지 -18°C ~ -20°C 의 온도로 냉장하는 단계로 구성된 食品冷凍 保存方法이다.